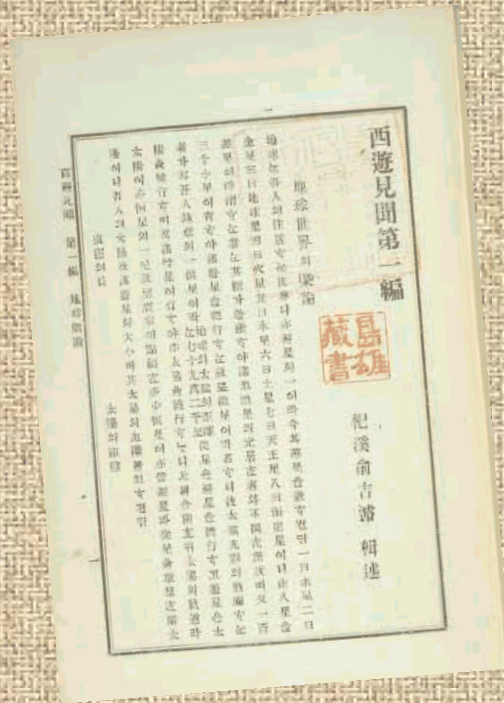


2013 사회적 이슈와 인권

제12주제 **촛불시위와 집회의 자유**



집회의 권리는 인생이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큰 진리이다. (중략)

국법에 따라 금지된 규정을 어기지 않는 한 이 권리를 제지할 수는 없다.

<유길준, 서유견문 중에서>

문제제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야간에 옥외에서 진행되는 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제10조)”

(헌법불합치 2010. 7. 1.부터 효력상실)

- 야간
 -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후
- 옥외
 -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
- 집회의 내용
 - 문화적 목적의 개최만 허용

집회의 자유



(1) 내 용

(2) 제한과 한계

(3) 야간 옥외집회의 금지

· 집회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회합(모임)하는 행위

· 집회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① 개최하고 진행할 자유 ② 참여할 자유 ③ 해산할 자유

(주/야간, 옥내/외, 침묵, 연좌, 정치, 문화 등 모든 형태의 집회 포함)

집회의 자유



(1) 내 용

(2) 제한과 한계

(3) 야간 옥외집회의 금지

• 제한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이익에 해악을 발생시키는 경우

• 제한의 한계

1. 과도한 제한은 금지(과잉금지원칙)

2. 허가제와 신고제

집회의 자유



(1)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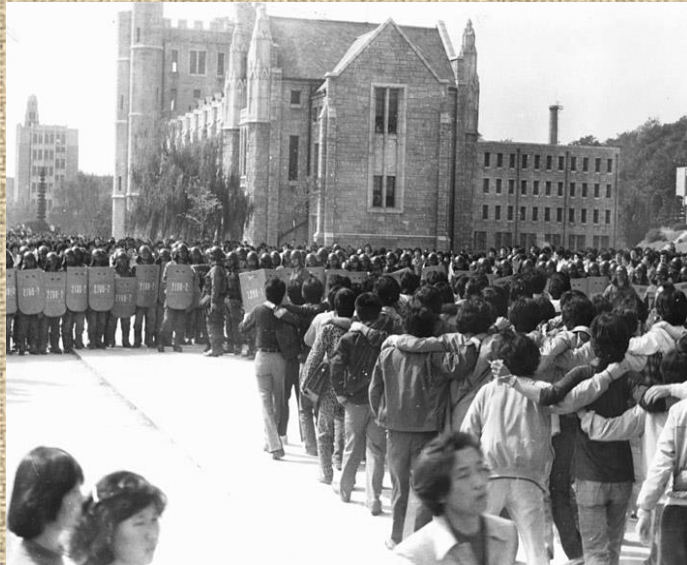
(2) 제한과 한계

(3) 야간 옥외집회의 금지

- **원칙적 금지(헌재 1994. 4. 28. 91헌바14)**
 - ① 질서유지의 상대적 어려움 ② 난폭화 우려 ③ 불순세력 개입용이
 - ※ **본질내용 침해여부(소극)**
 - ① 예외적 허용(사전 신고) ② 문화집회 허용 ③ 야간 옥내집회 허용

- **헌법불합치결정(헌재 2009. 9. 24. 2008헌가25)**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사전 신고)-사실상 '허가제'에 해당
(2010. 7.1.부로 효력상실)

시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 (제2조 제2호)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

시위와 행진

집회의 자유와 관련된 현안

1. 중요시설근처 집회의 금지

2. 복면착용 집회의 금지
3. 우발적 집회와 긴급집회
4. 1인 시위
5. 불법시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제11조)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등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 허용)
4. 외교기관 등 (예외적인 경우 허용)

집회의 자유와 관련된 현안

1. 중요시설근처 집회의 금지
- 2. 복면착용 집회의 금지**
3. 우발적 집회와 긴급집회
4. 1인 시위
5. 불법시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구체적인 해악 / 추상적인 해악
과도한 감시와 통제

표현방식의 문제
사생활의 비밀



집회의 자유와 관련된 현안

1. 중요시설근처 집회의 금지
2. 복면착용 집회의 금지
- 3. 우발적 집회와 긴급집회**
4. 1인 시위
5. 불법시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우발적 집회 / 긴급집회

48시간전 신고의무(제6조)

미신고시 해산명령 조치



집회의 자유와 관련된 현안

1. 중요시설근처 집회의 금지
2. 복면착용 집회의 금지
3. 우발적 집회와 긴급집회
- 4. 1인 시위**
5. 불법시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집단적 의사표현 /

개인적 의사표현(언론 · 출판의 자유)

변형된 1인 시위는 어떻게 볼 것인가

- 인간띠잇기 시위, 릴레이 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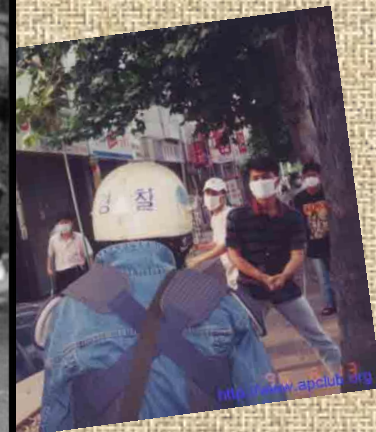


집회의 자유와 관련된 현안

1. 중요시설근처 집회의 금지
2. 복면착용 집회의 금지
3. 우발적 집회와 긴급집회
4. 1인 시위
5. 불법시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 ※ 집단소송제도 본래의 취지
- 사회적 약자의 보호
- ※ 집회와 시위 자유의 위축우려
- ※ 가해자 범위의 확정 문제



평화로운 집회문화의 정착



토론

1. 집회가 허용될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

2. 복면집회는 허용될 수 있는가?

3. 집회의 신고제가 집회의 허가제로 변질되는 경우는 언제인가?